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Problems in Comparing Crime Rates across Geographic Regions

저자 탁종연

(Authors) Tark, Jongyeon

출처 경찰학연구 15(4), 2015.12, 3-30(28 pages)

(Source)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15(4), 2015.12, 3-30(28 pages)

발행처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19336

APA Style 탁종연 (2015).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3-30

이용정보 61.73.82.***

(Accessed) 2021/04/26 22:1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Problems in Comparing Crime Rates across Geographic Regions

탁 종 연**

- 1. 들어가며
- II. 공식범죄율의 의의와 용도
- Ⅲ. 공식범죄율이 지역범죄지표가 되기 어려운 이유
- IV 나오며

〉〉국문요약〈〈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검찰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발표해오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는 등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공식범죄통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교는 위험한 행태라고 할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식범죄율을 비교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유로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문제와 분자로 이용되는 범죄통계 생성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지목하였다.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는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 통근 및 통학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식범죄건수는 각 지역별로 범죄사건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기록하는 전 과정에서 생기는 상당한 암수의 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결과, 112신고통계, 범죄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광역시도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서 신고율과 입건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범죄위험, 범죄율, 공식범죄율, 범죄통계, 신고율, 입건율, 범죄분석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특정 지역의 범죄위험이 높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지난 2014년 에도 대검찰청이 「범죄분석」통계를 발표하자마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많은 언론에서 "절도는 제주, 강도는 목포, 살인은 논산, 성폭력은 경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1) 언론에서는 제주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절도발생률이 568.2로 전국평균의두 배에 이르고, 아동 성폭력 발생률도 10만 명당 6.6건에 이르는 등 범죄의 위험도가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였다.2) 사실 이렇게 특정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몰아세우는 보도가 등장한 지는 제법 오래되었다. 이미 10년 전에도 가장 안전한 지역부터 위험한 지역까지 지도로 보여주는 보도가 발견된다.3)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 래한다. 그 지역의 평판을 훼손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누리망에는 범죄통계에 기초해 특정지역 사람들의 범죄성이 높다는 험담이 종종 발견된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성범죄 위험지역으로 꼽힌 동네에 사는 여성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범죄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식 범죄율이 지역의 범죄 상황을 잘 반영하는 지표라면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줄 세우기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보에 기반을 두어 지역주민과 형사사법 기관이 범죄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 지역주민들은 왜곡된 통계정보로 인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실까지겪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형사사법기관에게 잘못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 지방의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¹⁾ 연합뉴스. 2014. 11. 2; 국민일보. 2014. 11. 2; 서울신문. 2014. 11. 3; 경향신문. 2014. 11. 2; 한국경제. 2014. 11. 2; 서울경제. 2014. 11. 2.

²⁾ 제주인뉴스, 2014.11.3.

³⁾ 조선일보. 2005. 10. 31.; 동아일보. 2013. 8. 23.

적지 않은데,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엉뚱한 경찰관들이 나태와 비효율의 멍에를 쓰 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찰관들은 이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눈에 보기 좋은 통 계를 조작해 낼 수도 있다.4)

공식범죄율은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한 범죄건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이 범죄율 이 각 지역의 범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까?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의 범죄율을 공개하면서도 지역 간 범죄 상황을 비교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5 즉 미국에서는 공식범죄율이 비교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검찰에서는 공식범죄통계의 오남 용을 경고하기는커녕. 지역별로 각종 범죄위험도 순위를 직접 매기고 그림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이야 그렇다하더라도, 학계에도 이제껏 공식범죄율 의 정확한 의미와 적정한 용도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범죄율을 통해 특정 지역의 범죄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 다는 문제의식 하에, 공식범죄율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율 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로 계산하므로, 범죄율의 구성요소인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공식범죄건수가 가진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공식범죄율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율 계산의 분모인 주민등록부상 인구수가 각 지역의 인구크 기를 나타내는 타당한 지표인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식범죄통계 건수가 실제 범죄건수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건수는 피해자들의 범죄 인식률과 신고율, 그리고 수사당국의 인지율, 입건율, 그리고 기록률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임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범죄수 준 비교를 위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⁴⁾ 탁종연,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2006, pp.59-80.

⁵⁾ 미 연방수사국(FBI) 누리집. www.fbi.gov.

Ⅱ. 공식범죄율의 의의와 용도

1. 공식범죄율의 의의

공식범죄율(official crime rate) 혹은 범죄율(crime rate)이란 시기별 지역별 상대적 범죄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인구 수 대비 수사기관이 처리한 범죄사건수에 일정한 상수를 곱한 통계지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 즉 공식범죄율은 특정 공간의 주민 수 대비 공식 수사기관이 포착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공식범죄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검찰은 범죄발생비율(犯罪發生比率), 경찰은 범죄발생비(犯罪發生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학계에서는 통상 범죄율(犯罪率)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발생이라는 용어는 해당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사건을 반영한다는 뜻을 내포하므로 범죄발견율 혹은 줄여서 범죄율이라는 용어를 쓸 것으로 제안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범죄율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검찰청이 공식범죄율의 최종 발표기관이다. 대검은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관 등 각급 수사기관의 범죄통계를 모두 집계한 후, 지역별 인구수로 나누고 10만을 곱한 후「범죄분석」등을 통해 지역별 공식범죄율로 발표하고 있다.8) 현재대검은 시군구 단위의 범죄율을 공개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구(區) 마다 범죄율을 제공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천, 수원, 성남, 전주, 안양, 청주, 창원, 논산 등 일부 도시 외에는 기타도시와 도시이외 지역으로 뭉뚱그려 발표하고 있어 정확히 시군구별 범죄통계를 발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경찰에서는 「경찰통계연보」를 통해서 7대 도시와 기타지역의 유형별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9)

⁶⁾ Bachman, R & R. Paternoster,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Boston: McGrow Hill, 2003; Sutherland, H.E, D. R. Cressey & D. F. Luckenbill. "Principles of Criminology.", New York:Altamira Press. 1992

⁷⁾ 탁종연·박성민,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발견과 해결통계 개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4, pp.177-200.

⁸⁾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

⁹⁾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찰청, 『범죄통계』, 2014, p.107.

범죄율의 구체적인 형태는 단순히 범죄건수를 인구수로 나눈 상대빈도보다는 특정 상수를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는 인구에 비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10만 혹은 1천과 같이 큰 상수를 곱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13년 한국 범죄발생 총건수 가 2,006,682건이고 인구는 51,182,420명으로 추산되므로 상대빈도에 10만을 곱하여 인 구 10만 명당 발생비율이 3,921이라고 발표하는 것이다.10)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는 전체범죄의 범죄율과 개별 범죄의 범죄율을 모두 제 공한다. 정확히 말하면 개별 범죄 범죄율은 없지만, 지역별로 인구수와 함께 개별 범죄 의 "발생건수"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시군구의 죄종별 범죄율을 계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인구가 160,070명인 서울 종로구에서 절도범죄건수가 2,485건으 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구 10만 명당 절도율은 1552 (=2,485/160,070*100,000) 임을 알 수 있다.

2. 범죄율의 용도

범죄율은 한 지역의 범죄수준을 시간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 된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 일 년 전에 비해 올해 범죄율이 증가하면 범죄가 더 심각 해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한 지역의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면 그 지역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범죄 율은 범죄의 증감 자체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이나 법과 기술적 환 경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란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수사 및 통계정 책 등에 따라서도 범죄통계가 급격히 변했던 바 있다.11) 범죄율의 변화를 순수하게 범 죄 자체의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일정한 시점에 범죄율에 근거해 지역 사이의 범죄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사실 아직도 일각에서 집단 사이의 범죄수준을 비교할 때 단 순 빈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범죄율을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는 발전된 방법이기는 하다12) 하지만 범죄빈도가 아니라 범죄율을 사용해도 지역 간 범죄 상황비교에 문제

¹⁰⁾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 p.236.

¹¹⁾ 탁종연,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2011, pp.245-286.

¹²⁾ 예를 들어, 2014년 대검의 「범죄분석」에서는 공무원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는 자 1만1458명 중 경찰청 소속이 1,202명으로 가장 많고, 법무부가 264명, 국세청 136명 순이라고 해당부처의 공무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 간 범죄율을 비교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려진 편이다. [3] 나라마다 범죄의 정의가 다를 뿐 아니라,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나 통계를 처리하는 관행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공식범죄율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지역 간 공식범죄율 비교할 때는 그런 조심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에서 범죄율에 의거하여 지역별 범죄위험 순위를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범죄학자들마저 공식통계를 이용해 각 지역별 성폭력 위험순위를 매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14) 하지만 같은 법체계가 적용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 같은 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이 논문의 핵심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범죄율을 단순히 지역의 범죄 상황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경찰 범죄치안활동의 성과지표로 생각하기도 한다. 15)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면 경찰이 범죄예방을 업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돌리는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경찰관들이 범죄통계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까지 느낀다고 한다. 16) 물론 이런 입장은 범죄가 경찰의 예방활동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는 범죄학적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범죄율이 지역 범죄 상황의 타당한 지표라는 점을 전제하므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율의 적절한 용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3. 공식범죄율의 생성과정

공식범죄율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전에 인식해야 할 것은 이 통계는 일련의 사회적

범죄자 빈도비교를 했다. 이 같은 발표는 소속 공무원의 절대숫자가 많은 경찰청의 범죄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경찰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¹³⁾ Mosher, C.J., Miethe T.D. & Hart T. "The Mismeasure of Crime., Sage: Thousand Oaks, 2011; Von Hofer, H. "Crime Statistics as Constructs: the Case of Swedish Rape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8: 2000, pp.77-89.

¹⁴⁾ 박준휘·강용길·김도우·정진성,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¹⁵⁾ Mosher 외 앞의 글.

¹⁶⁾ 탁종연,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2006, pp.59-80; Mosher 외, 앞의 글.

심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는 점이다 17) 범죄율의 형성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범죄율을 계산하려면 해당지역의 정확한 인구수를 추산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범죄율을 측정하려면 수사기관이 처리한 범죄사건을 지역별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범죄사건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공식범죄로 등록되다.18) 첫 단계는 피 해자가 범죄피해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로 피해자 또는 주변사람이 범죄를 신 고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이 그 사건을 직접 인지(認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은 접수한 사건을 입건(立件)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범죄통계를 발 생지역별로 집계해야 한다. 범죄사건은 이런 과정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범죄 통계로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공식범죄율을 이용해 지역별 범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왜 그릇된 행태인지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되는 인구수 의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분자인 범죄건수의 산정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Ⅲ. 공식범죄율이 지역 범죄지표가 되기 어려운 이유

1. 인구수의 문제

범죄율이 지역 범죄 상황의 비교지표가 되기 힘든 이유는 첫째 범죄율 계산에서 분 모로 사용되는 주민등록 인구수19)가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정 확히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주민등록인구는 그 지역에 살면서 잠재적 범죄자 및 피해자의 수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¹⁷⁾ 탁종연 박성민,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발견과 해결통계 개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4, pp.177-200; Mosher 외 앞의 글; Von Hofer 앞의 글.

¹⁸⁾ Sparks, R.F., H.G. Genn & D. J. Dodd, "Surveying Victims: a study of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rime, and attitudes to criminal jus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범죄율 계산할 때 분모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통계청 의 주민등록 인구수라고 각주에 적혀 있다 (대검찰청, 2014:236).

주민등록상 인구의 한계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주민등록상 인구에는 한 지역에 두고 실제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 방출신으로서 서울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상당수는 주민등록을 본가에 남겨두 는 데 이런 사람들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에 빠져 있다. 둘째 주민등록상 주소지 바깥으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및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 및 통학을 하는 사람이 각각 125만 명과 17만 명인데 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는 50만 명, 인천으로는 8만 명만이 다니고 있다. 즉 서울에는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 활동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80만 명20)이상 더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서울에서 실질적으 로 거주하거나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잠재적인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범죄율 계산의 분모인 서울의 인구는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서울의 범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과장되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서울에서 수사기관들이 처리한 범죄건수가 40만 건이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1,014 만 명이라면 범죄율은 3.945으로 나타나지만.21) 서울인구에 실제 활동인구 80만 명을 더해 재계산하면 범죄율은 3,65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서울의 실제 인구대 비 범죄건수는 인천(3,746)보다 낮다고 볼 수도 있다.22) 같은 맥락에서 동일 광역시내 에서도 시군구 단위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시군구 단위에서도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 인구 차이는 클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민등록 인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일시적 유동인구도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같은 지역은 일시적 방문객이 몰리는 곳이다. 서울에는 인접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쇼핑, 관광, 의료, 회의, 사업을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근래에는 외국인 방문객만도 구백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²³⁾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국내외에서 매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²⁴⁾ 주민등록부에 기록될 여지가 없는 일시적 방문객들도 잠재적으로 범죄자 혹은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손님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과대평가된

²⁰⁾ 경기 및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인구-서울에서 경기 및 인천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125만 명+17만 명)-(50 만 명-8만 명)=84만 명.

²¹⁾ 대검찰청, 앞의 글. p.236.

²²⁾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경기도를 포함한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범죄율은 보고되지 않는다.

²³⁾ 금기용·박윤정, 『서울관광 질적 내실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4.

²⁴⁾ 제주도 관광협회. 2015, http://www.visitjeju.or.kr/korea/main.html

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일부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원정을 가기도 한다. 특히 재물과 사람 등 목표물이 많은 지역 즉 범죄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원 정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범죄자들 의 범죄가 많아지면 그 지역의 범죄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의 또 다른 한계는 지역별 인구구성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지역별 범죄율을 비교하려면 지역의 성별, 연령대별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성범죄율 을 비교하려면 지역의 여성인구수를 분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 식 성범죄율은 남녀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만든다. 200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여성이 4,905,454명 그리고 남성은 4,726,028명이 살고 있어 여성대비 남성인구 비율이 %.3%인데, 인천에는 여성 1,316,473명, 남성 1,315,562명으로 성비가 99.9%, 대전에서는 남성 745,150명, 여성 745,008명 등 성비가 100.0%가 된다.25) 따라서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는 인천이나 대전 등에 비해 전체인구수에 비해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 탓에 성범죄비율이 부풀려지 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현재 공식범죄율 계산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분모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구보다 실제 거주, 활동,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 혹은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인 구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지역의 범죄율이 높게 보고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주민등록 인구 지표의 한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공식범죄건수에 관한 문제

공식범죄율은 공식범죄건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공식범죄율로 지역 간 범죄를 비교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분자로 사용되는 공식범죄건수가 실제 일어나는 범죄사건을 제대로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범죄사건 중에서 아주 일부만이 공식 범죄통계로 집계된다는 점은 범죄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26)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²⁵⁾ 국가통계포털, 2015, http://kosis.kr.

²⁶⁾ O'Brien, R. 『Crime and Victimization Data』, Beverly Hills:Sage, 1985; Sutherland 외 앞의 글; 김준호·이동 원,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경찰이 기록하지 않는 범죄, 즉 범죄암수(dark figure of crime)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범죄보다 많은 것이다. 따라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공식범죄건수를 이용해 지역의 범죄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애초 무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식범죄건수가 전체 범죄의 일부만을 반영한다하더라도,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것만으로 지역별 비교를 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볼 근거도 없다.²⁷⁾ 오히려 전체 범죄 중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고 봐야 한다. 지역별로 시민들의 신고율이나 경찰의 기록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사건이 얼마나 걸러져 나타나는지 알기 힘들다.

공식범죄통계란 일련의 사회 심리학적 절차를 거쳐 생성되는 사회적 구조물이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했다.²⁸⁾ 아래에서 범죄의 인식, 신고, 입건, 그리고 기록 등 공식범죄 통계의 생성 전 과정에서 많은 범죄들이 암수로 남게 된다는 점과, 그런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걸러지는 범죄의 비율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가. 범죄인식(perception)과 정의(definition)

어떤 범죄사건이 공식범죄통계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29) 물론 살인사건처럼 경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범죄자가 자수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에 속한다. 폭력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절도라면 자신의 재산이 누군가에의해 도난당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미성숙,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면 범죄피해를 자체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이 교사에게, 치매노인이 요양시설 직원에게, 또는 마취상태의 환자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하는 고객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었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탁종연 2006 앞의 글; 황지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pp.279-303; 황지태,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형사정책연구제21권 제3호, 2010, pp.7-51.

²⁷⁾ Sutherland 외 앞의 글; Spaks 외 앞의 글; 탁종연 2011. 앞의 글.

²⁸⁾ Sparks 외 앞의 글; Von Hofer 앞의 글.

²⁹⁾ Sparks 외 앞의 글; Mosher 외 앞의 글.

거나. 기업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사법기관이 그런 사 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범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부주의나 혼잡한 상황 때문 에 자신의 권익침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나 가벼운 성추행을 당했다면 범죄가 이뤄졌는지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범죄로 처리되려면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한 후에 그것을 범죄로 정의해 야 한다.30)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코를 가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지만, 그가 그 사실을 장난, 실수, 또는 까분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행동을 신 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초등학생이나 상 사에게 다른 직원 앞에서 욕설을 들은 회사원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범죄라고 정의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피해를 인식하고 범죄로 정의하는 비율, 즉 넓은 의미의 범죄인식률은 얼마나 될까? 서구에서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소유권, 폭력범죄에서는 고의 혹은 의도, 그리 고 정당한 상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31) 인식률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범죄의 종류, 시기,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에 따 라 범죄 인식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를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은 성별로 다르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로 크게 변화했다 고 보고된 바 있다.32)

지역별로도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률 차이가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보수 적이고 가부장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교사의 학생체벌을 범죄로 인식할 확률이 적 을 수 있다. 거주민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기나 정보침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대로 노년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가짜 약을 구매했더라도 범죄피해라고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차별적 범죄인식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탓에 더 이상의 추론은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범죄인식률 차이 외에 범죄의 심각도 판단에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로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도 인식이 다소 다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성관련 범죄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심각하

³⁰⁾ Sparks 외 앞의 글. pp.5-6.

³¹⁾ Sparks 외 앞의 글 p.7.

³²⁾ 여성부, 『2008년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2008.

게 보고 있고, 아동학대, 부정부패, 성범죄 등에 대해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40대 이상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33) 지역별로 성별, 연령대 인구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역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한 심각도 판단이 다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각도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것으로 인해 신고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피해자들이 신고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중요요인 하나가 범죄의 심각도이다.34)

요약하면 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범죄로 정의해야 범죄통계로 기록될 여지가 생기며, 특히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범죄 인식, 정의, 심각도 판단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공식범죄통계의 가치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 범죄의 신고 및 인지

1) 신고율

공식범죄통계에 범죄가 기록되려면 사건을 범죄로 인식한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그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경찰이 직접 인지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예외이다. 시민들이 112신고나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사실을 알릴 때, 즉 넓은 의미로 신고할 때 그 사건이 공식범죄통계로 기록될 여지가생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숨은 범죄(hidden crimes)로 통계에서 누락될 것이다.

공식범죄율에 의존해 지역별 범죄를 비교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신고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지역별 신고율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강도, 절도, 강간 폭행, 상해 등 여덟가지 대상범죄의 신고율이 26.1%에 불과했다. 35) 그나마 이것도 2008년 14.8%, 2010년

³³⁾ 박철현·장규원·정현미·진수명,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³⁴⁾ 탁종연·노성훈, "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1호, 2009, pp.41-70; 탁종연,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pp.53-75; Avakeim, E.F., Fyfe, J.J. & McCoy,C. "Did you call the police? What did you do?: An empirical assessment of Black's theory of mobilization f law" Justice Quarterly, 16, 1999. pp.765-792; Bachman, R, "The factors related to rape reporting behavior and arrest: 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 1998. pp.8-29; Black, D. The production of crim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1970. pp.733-748; O'Brien, R. 『Crime and Victimization Data』, Beverly Hills:Sage, 1985.

22.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죄종별 신고율 차이가 커서, 절도는 16.4%, 강 도는 25%, 폭행은 46.0% 등으로 보고되었다.

〈표1〉2007년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지역별 피해건수 및	신고윸*	(n=10.350)
----------------------------------	------	------------

지 역		재 산 범 죄 절도 및 사기)	폭 력 범 죄 (강도, 폭행, 공갈, 성폭력)		
	피해건수	신고율 (신고건수/피해건수*100)	피해건수	신고율 (신고건수/피해건수*100)	
서울	762	16.1	98	7.1	
부산	203	18.7	30	20.0	
대구	222	14.0	12	16.7	
인천	205	14.1	13	38.5	
광주	92	9.8	7	28.6	
대전	101	12.9	8	25.0	
울산	103	15.5	3	66.7	
경기	752	13.3	56	10.7	
강원	95	24.2	6	0.0	
충북	133	20.3	8	12.5	
충남	132	18.9	4	0.0	
전북	114	19.3	5	20.0	
전남	116	9.5	8	0.0	
경북	184	10.3	9	22.2	
경남	225	16.4	17	17.6	
제주	25	12.0	2	0.0	
계	3,514	15.0%	286	13.6%	

^{*2007}년 민생침해범죄피해실태에 관한 보고서 내용 100-106쪽 재구성

더 중요한 사실은 지역별 범죄 신고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시행 한 범죄피해조사에서 시도별 신고율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6. 이 전 화 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강원도의 신고율이 24.2%로 가 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9.5%에 불과해 2배가 넘는 격차가 났다 (표 1 참 조). 강도나 강간 등 폭력범죄의 경우 울산의 신고율이 66.7%나 되었던 데 비해, 서울 의 경우 7.1%에 불과해 거의 10배의 차이가 있었다. 즉, 신고비율이 높은 강원도나 울

³⁵⁾ 김은경 외 앞의 글. pp.214-216

³⁶⁾ 김지선·홍영오, 『민생침해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조사』, 대검찰청, 2007.

경기 남_읍면부

경기 북_동부

경기 북_읍면부

전체

산의 경우 비율이 저조한 전남이나 서울보다 공식범죄율이 몇 배나 과대 산정되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도 수준에서 신고율 편차가 크다면 시군구와 같이 소규모 지역단위에서도 큰 격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는 2014년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해³⁷⁾ 서울과 경기도 각 지역의 절도피해건수와 신고율을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표집했는데, 각지역의 절도피해 신고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도신고율이 가장높은 서울강북 서쪽지역은 신고율이 80%, 다음으로 서울강남 동쪽지역은 77.8%에 달했으나, 신고율이 가장 낮은 서울강북 동쪽은 15%에 불과했다. 피해사례가 작기 때문에해석에 주의를 해야 하긴 하지만 적어도 광역시도보다 작은 지역단위의 신고율 차이가작지 않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절도 피해건수	신고건수	선고물 (신고건수/피해건수*100)
서울 강북서	5	4	80.0
서울 강북동	20	3	15.0
서울 강남서	12	4	41.7
서울 강남동	9	5	77.8
경기 남_동부	41	20	48.8

2

5

1

40.0

33.3

50.0

43.1%

〈표 2〉서울 및 경기지역 절도피해건수와 신고율* (N=4,220)

5

15

2

109

요약하면 공식범죄율은 피해자가 인식한 범죄사건을 신고해야 기록될 수 있는데, 신고율 자체가 낮고 지역별로 범죄신고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식범죄율에 의한각 지역의 범죄 상황 비교는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서 절도는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및 대인절도 사례를 모두 합한 것이다.

³⁷⁾ 최수형·탁종연, 『전국범죄피해조사(IV)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 인지율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주로 피해자나 관계인의 신고 때문이지만, 때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수집이나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의 단서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인지(認知)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별 수사관들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지만 통상 경찰 지휘관의 의지에 좌우된 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이 절도와 강도범죄를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라는 지휘지침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청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우리 나라에서는 그 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과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인지율도 즉시 올라가게 된다. 몇 년 전 경찰에 실적주의(實 績主義)가 강조되던 시점에서 절도범 검거건수를 높이기 위해 파출소 직원들까지 사복 을 입고 자전거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나서기도 하였다.³⁸⁾ 따라서 지역 수사기관장 이 특정한 범죄 단속을 강조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범죄를 더 많이 인지할 개연성 이 커질 것이다.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 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얼마나 실시했느냐를 들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는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므로 인지활동이 범죄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다. 범죄 입건

시민들이 범죄사건을 신고한다 해도 그 사건이 반드시 공식범죄통계로 기록되는 것 은 아니다.39) 한국에서는 사건을 알게 된 수사관이 그 사건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40))에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이런 수사개시 행위를 입건(立件)이라 하는데, 112신고 등을 통한 통상의 범죄신고 사

³⁸⁾ 탁종연, 2011, 앞의 글.

³⁹⁾ Mosher 외 앞의 글; O'Brien 앞의 글; Skogan, W. 『Crime and crime rates, in W. Skogan (ed.) Sample Surveys of Victims of Crime』, Cambridge, M.A:Ballinger, 1976; Sutherland 외 앞의 글; Wilson, J.Q. "Variety of Police Behavior: The Management of Law and Order in Eight Communities..., Cambridges, MA: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Yung, C. R., "How to Lie with rape statistics: America's hidden rape crisis", lowa Law Review. 99: 2014. pp.1197-1256; 탁종연, 2006 앞의 글; 탁종연, 2011 앞의 글

⁴⁰⁾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하여야 한다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 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건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소속한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진정, 탄원, 고소, 고발⁴¹⁾ 등을 한 경우에는 경찰서의 수사부서의 경찰관들이 입건 결정을 하게 된다. 입건행위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것을 일컫는데 근래에는 킥스(KICS)와 같은 전산프로그램상 사건부에 입력함으로써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을 입건할지 여부는 법적인 기준에 의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합의의사나 피해심각성 등을 검토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42) 따라서 폭행으로 신고 된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절도로 신고 된 사건은 아이들의 실수로 처리하고 훈방하기도 한다. 즉 경찰은 범죄사건을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새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43)

경찰관들이 범죄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해도 범죄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통고처분(通告處分)을 하거나 즉결심판(即決審判)을 청구할 때가 그렇다. 이렇게 되면 해당 피의자가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하지만 그 사건은 공식범죄통계에는 기록되지 않게 된다. 즉 경찰관들이 범죄사건을 알게 되어도 상당수 사건을 비공식처리하거나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고, 일부 사건만을 정식 입건하여 범죄통계로 기록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범죄를 입건하는 비율의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우선 지역의 수사기관의 정책에 따라 특정 범죄나 통계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건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이 범죄의 검거실적을 강조한다면 훈방하거나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소 경미한 사안들이라도 정식으로 입건할 개연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같이 특정한 범죄단속에 관심이 많다면 소속 경찰관들이 그런 사건을 입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수사기관별로 입건관행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유대가 강한 농어촌지

⁴¹⁾ 고소, 고발, 자수의 경우에는 혐의 판단 없이 바로 수사를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0조),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도 각하 등의 방식으로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부와 대검찰 청과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 및 고발 남발로 인한 전과자 양산 및 피해방지를 위해 각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보도자료, 2015. 2. 26).

⁴²⁾ 박형민·황정인·탁종연,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탁종연·박형민, "경찰관들은 어떤 폭력사건을 비공식 처리할까?",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2012, pp.375 -398; Black 앞의 글

⁴³⁾ Sparks 외 앞의 글; Yung 앞의 글

역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사건을 비공식 처리하는 관행이 더 강할 수 있고. 이런 관습은 입건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 경찰기관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입건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44) 경찰관들의 유리성과 전문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지사건이 공식처리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보다 전문적인 기관은 발견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해결률이 낮아 비전문적인 기관보다 비효율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 서 경찰기관이 어떤 유형의 순찰전략을 채용하는지에 따라 알게 된 사건을 통계로 산 입하는 비율에 차이가 날 수 있다.45) 어떤 경찰기관이 야경꾼유형이나 서비스유형보다 는 법률적 유형의 경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각 지방의 경찰기관별로 입건관행에 있어 체계적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입건율을 검증한 실증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각 지역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행태를 관찰해야겠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된다. 지역의 입건율 격차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으로 112신고건수와 입건건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많은 범죄가 112신고를 통해 경 찰에 알려지기 때문에 신고 대비 입건건수는 입건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절도 의 경우 288,343건 중 225,979건 즉 78.4%가 피해자 신고에 의해 시작되었으므로46) 입 건율 연구에 적합하다.

〈표 3〉는 2013년 한해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절도사건 신고건수와 입건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절도 입건건수 대비 112 신고건수의 비율, 즉 입건비율은 지방경찰청별로 크게 출렁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전체적의 입건비율은 86,2%인데, 입건비율 이 가장 높은 경기청은 119.7%나 되고, 강원청도 118.6%에 이르는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인천청은 50.7%, 광주청은 39.5%에 불과했다. 즉 신고건수 대비 입건건수의 비율 이 최대 3배나 되는 것이다. 물론 지방청별로 112에 절도로 신고 된 사건 중에서 절도 로 입건하기 힘든 사건의 비율도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입건비율 의 변량이 큰 것은 각 지방청별로 입건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결국 공식범죄율에 무시 못 할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⁴⁴⁾ Skogan 앞의 글.

⁴⁵⁾ Wilson 앞의 글.

⁴⁶⁾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찰청, 『범죄통계』, 2014, p.222.

(표 3/ 2013년 전국 시항성활성활 철도 H2전보신구의 급신신구							
지방경찰청	절도 112신고 건수* 절도 입건(발견)건수**		입건비율 (신고건수/입건건수*100)				
서울청	44,549	61,585	72.3				
부산청	17,722	23,854	74.3				
대구청	14,525	17,465	83.2				
인천청	5,553	10,945	50.7				
광주청	4,912	12,432	39.5				
대전청	10,410	11,757	88.5				
울산청	5,470	6,648	82.3				
경기청	69,142	57,757	119.7				
강원청	8,426	7,105	118.6				
충북청	7,560	9,073	83.3				
충남청	10,264	13,154	78.0				
전북청	8,976	9,576	93.7				
전남청	6,715	8,993	74.7				
경북청	12,530	13,049	96.0				
경남청	16,625	18,485	89.9				
제주청	5,145	5,827	88.3				
계	248,524	288,343	86.2%				

〈표 3〉2013년 전국 지방경찰청별 절도 112신고건수와 입건건수

입건율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경찰이 입건한 사건 수대비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 즉 해결률⁴⁸⁾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해결률 혹은 검거율은 수사기관의 수사역량과 노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사기관들의 입건관행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힘든 사건은 입건을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검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수사역량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입건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49) 여기서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절도범죄의 해결률을 비교해 보았다. 절도를 대상으로 선택한

^{* 2013}년 지방청별 절도 112신고건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았음.

^{**} 절도입건건수는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찰청「범죄통계」에서 발췌. 종래 발생건수로 잘못 불러왔으나, 내용적으로 볼 때 입건건수 혹은 발견건수라고 불러야 맞다⁴⁷⁾.

⁴⁷⁾ 탁종연·박성민,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발견과 해결통계 개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4, pp.177-200.

⁴⁸⁾ 이제까지 경찰에서는 검거율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검거라는 용어는 범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이므로 해 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따라 종래 사용하던 검거율도 해결율로 바꿔 쓰는 것이 타당하다.

⁴⁹⁾ Skogan 앞의 글.

이유는 가장 흔하게 기록되는 범죄이기도 하고, 경찰내부의 환경에 의해 가장 크게 영 향을 받는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50)

(# 1)	2011년보더	2013년까지	저구	지방경찰청별	전도버지	바겨	민	채견류	え ∩I*
\	' 20미린구니	2013단까지	건축	시하이라이라	2272	=1 '	퓻	에글프	-

	2013년		201	2012년		2011년		
	발견건수*	해결률	발견건수*	해결률	발견건수*	해결률		
서울청	61,585	32.5	61,329	31.30	54,303	37.0		
부산청	23,854	43.4	25,495	42.1	24,603	42.3		
대구청	17,465	50.5	16,545	41.7	14,835	42.9		
인천청	10,945	56.3	10,372	50.8	10,137	64.2		
광주청	12,432	54.1	12,666	43.7	13,367	42.5		
대전청	11,757	36.9	12,599	29.1	12,802	31.6		
울산청	6,648	42.4	6,109	40.5	6,761	46.6		
경기청	57,757	37.3	58,247	35.3	54,921	39.0		
강원청	7,105	45.9	7,636	40.8	7,656	42.6		
충북청	9,073	51.6	9,158	38.9	10,366	37.4		
충남청	13,154	39.1	14,040	32.8	12,373	34.5		
전북청	9,576	54.8	9,315	40.1	9,494	44.7		
전남청	8,993	48.1	9,129	42.6	9,702	42.7		
경북청	13,049	40.6	13,526	36.7	14,107	35.1		
경남청	18,485	38.3	18,849	33.8	20,207	42.1		
제주청	5,827	38.1	5,039	29.7	5,402	31.4		
계	288,343	41.1%	290,460	36.6%	281,362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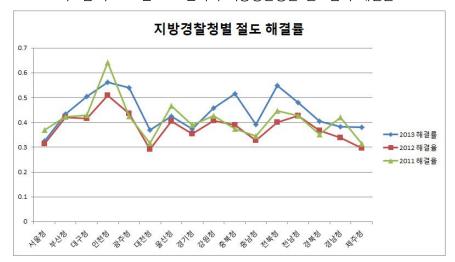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이 공동발행 한 2011년부터 2013년「범죄통계」재구성

(표 4)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의 절도해결률을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각 지방경찰청들의 절도해결률간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인천경찰청의 해결률이 64.2%나 되는데 비해 제주청은 31.4%, 대전청은 31.6%에 그 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2012년에도 인천청은 50.8%에 달했으나, 제주청은 29.7%, 대전청은 29.1%에 그쳤으며, 가장 최근인 2013년에 자료에서 인천청은 해결 률이 56.3%이었으나 서울청 32.5%, 대전청 36.5%에 그쳤다.

〈표 4〉와 이를 정리한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는 해결률은 추이가

⁵⁰⁾ 탁종연, 2011, 앞의 글.

지방청별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2011인천경찰청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결률이 64.2%, 50.8%, 56.3%로 다소 변화가 있지만 해결률 순위는 계속 수위권이다. 반대로 대전경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31.6%, 29.1%, 36.9%로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세 해의 해결률을 상관분석해보면, 2011년과 2012년의 상관관계는 .869,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521로 나타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생략). 즉각 지방청의 절도해결률은 상당히 큰 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편차는 안정적이란 것이다.



〈그림 1〉 2011년 2013년까지 지방경찰청별 절도범죄 해결률

이와 같이 지방경찰청별 해결율의 안정적이고 커다란 차이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각지역의 입건관행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경찰청과 다른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10여명을 면접하였는데,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인천에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수사를 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다른 지방 경찰관들은 대부분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입건의 기준 혹은 관행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역별로 공식범죄율의 격차도 이런 차별적 입건율에일부 기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범죄통계 기록

수사관이 범죄사건을 정식 입건하여 처리했더라도 그 사건이 반드시 범죄통계에 기 록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을 KICS와 같은 범죄통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자가 그 내용을 승인해야 비로소 범죄통계로 집계된다. 과거 범죄통계 업무가 전산화 되기 이전에는 경찰은 종이원표에 사건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였 다.51) 이런 비전산화 시절에는 발생율이나 검거율 등 통계지표에 연연하여 범죄사건을 처리하고도 통계 입력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52)

지금은 모든 범죄사건의 기록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대부 분 입력된다고 보아야 한다.53) 경찰과 검찰 등 주요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접수와 입 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하고, 범죄통계도 이에 연동하여 입력하기 때문에 처리된 사 건을 통계에서 누락하기 힘든 것이다.54) 하지만 현재도 처리한 사건을 입력 또는 승인 하지 않거나, 입력 시기나 승인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입건된 사건이 모두 특정 시기에 정확히 입력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철도공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특별사법경찰에서는 아직도 통계입력을 위 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종이원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입력 누락의 소 지가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통계 기록단계에서 남아있는 문제로는 범죄사건의 발생지역이 부정확하다는 것 이다. 우선 범죄통계 원표에 기록하는 범죄발생지에 전국 시군구가 모두 예시되어 있 지 않다. 검찰에서 줄 세우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선별된 일부 도시들만을 일컫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현 실에서 연구자들이 전국의 시군구 수준의 범죄율 비교를 할 방법이 없다. 보다 더 중 요한 문제는 실제 범죄가 일어난 장소와 발생지로 기록된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한 절도범이 여러 곳에서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다 체포되었다고 하 자. 이 때 형법적으로 상습절도 한 건으로 처리되고 통계상 범죄 장소를 대표 범죄의 장소 한 곳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⁵¹⁾ 나영민,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1년과 범죄통계의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식지 제118권, 2011, pp.1-5.

⁵²⁾ 탁종연, 2011, 앞의 글.

⁵³⁾ 나영민, 앞의 글.

⁵⁴⁾ 탁종연 · 노성훈, 앞의 글.

요약하면 공식범죄통계는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에서 범죄통계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생성되는데, 과거처럼 처리하고도 입력하지 않는 폐단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발생장소를 생략하거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범죄통계 기록 과정의 오류도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간 범죄수준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Ⅳ. 나오며

지역별로 범죄위험도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명예추락, 불안감 조성, 그리고 재산상 손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일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형사사법 체계의 과학적으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평가 작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확인하면, 그 지역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정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검찰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발표해오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는 등,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가 낯설지 않다. 심지어 일부 범죄학자들도 비판의식 없이 공식통계를 이용해 지역의 위험순위를 매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지역의 범죄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식범죄율이 비교목적으로 부적절한 이유로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문제와 분자로 이용되는 범죄통계 생성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지목하였다.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는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 통근 및 통학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공식범죄건수는 각 지역별로 범죄사건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기록하는 전 과정에서 생기는 상당한 암수의 편차를 반영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결과, 112신고통계, 범죄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광역시도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서 신고율과 입건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범죄피해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년마다 전국의 14세 이상 시민들을 약 6,300가구, 13,000명을 대상으로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상해, 손괴, 사기, 주거침입 등 8 가지 범죄피해 경험과 관련된 인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55) 하지만 이 조사로는 시군구 수준은 물론 광역시도 수준의 범죄위험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서울, 경기, 경남을 제 외하고 시도별로 천명도 안 되는 표본을 추출하고 있고, 각 범죄의 피해율은 3.9%에 불 과해 오차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각 시도별 전체 피해율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도 최소 42,567가구가 필요한데 각 시도의 죄종별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 에서 불가능한 바람이다. 또한 범죄피해조사에서 찾아 낸 피해사례가 과연 법적으로 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설문지만 바꿔도 크게 요동치는 피해 율56) 등을 고려하면 범죄피해조사는 보조적으로 전체 범죄피해율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는 될지언정, 독자적인 지역별 범죄위험도 평가도구가 되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 일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지역별 범죄위험도 비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 으나 정확한 비교는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입건율이나 기록률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몫인 인식률이나 신고율은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 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조사 등 대체지표를 질적·양적으로 발전시켜 각 지역 의 피해율과 신고율을 좀 더 정확하게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된 사건 중 공식적 으로 처리된 사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두 가지 범죄지표가 적어도 지역별 순위에서 일치(convergence)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공 식범죄통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차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다.57) 또한 그런 비교 작업도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를 모두 잘 이해하는 기관 이 전문 인력을 두고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의 행태로 보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단순히 수치를 제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범죄 지도를 그리는 한편, 범죄예측모형까지 구축하고 있다. 자료에 기반을 둔 형사정

⁵⁵⁾ 김은경 외, 앞의 글.

⁵⁶⁾ 최수형·탁종연, 앞의 글.

⁵⁷⁾ O'Brien 앞의 글; Lynch, J & L. Addington, 『Understanding Crime Statistics: Revisiting the Divergence of the NCVS and UCR₁, N.Y:Cambridge Press, 2007.

책 형성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가 지역범죄수준의 지표로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공감한다면 앞으로 통계를 이용한 일련의 분석 작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발생비율이높은 지역을 보여줄 때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라도 병기해 주고, 언론도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기대한다.

〈논문접수 2015. 10. 30, 심사개시 2015. 11. 16, 게재확정 2015. 12. 18.〉

참고문헌

Ⅰ. 다행본

1. 국내문헌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김지선·홍영오. 『민생침해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조사』, 대검찰청, 2007.

김준호 · 이동원,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금기용·박윤정. 『서울관광 질적 내실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

박준휘·강용길·김도우·정진성,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 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박철현·장규원·정현미·진수명.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형민·황정인·탁종연,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탁종연 · 전영실 · 이희길 · 심수진,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대전:통계개발원, 2008.

최수형·탁종연,『전국범죄피해조사(IV)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찰청, 『범죄통계』,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찰청, 『범죄통계』,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찰청、『범죄통계』, 2014.

여성부, 『2008년도 성문화ㆍ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2008.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4.

2. 국외문헌

- Bachman, R & R. Paternoster,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Boston: McGrow Hill, 2003.
- Lynch, J & L. Addington, "Understanding Crime Statistics: Revisiting the Divergence of the NCVS and UCR₁, N.Y:Cambridge Press. 2007.
- Mosher, C.J., Miethe T.D. & Hart T. The Mismeasure of Crime, Sage: Thousand Oaks, 2011.
- O'Brien, R. Crime and Victimization Data, Beverly Hills: Sage, 1985.
- Sparks, R.F., H.G. Genn & D. J. Dodd. "Surveying Victims: a study of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rime, and attitudes to criminal jus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7.
- Skogan, W. Crime and crime rates, in W.Skogan (ed.) Sample Surveys of Victims of Crime, Cambridge, M.A: Ballinger, 1976.
- Sutherland, H.E., D. R. Cressey & D. F. Luckenbill. Principles of Criminology, New York: Altamira Press, 1992[1924].
- Wilson, J.Q. "Variety of Police Behavior: The Management of Law and Order in Eight Communities,", Cambridg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Ⅱ. 논문

1. 국내문헌

- 나영민,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1년과 범죄통계의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소식지 제118권, 2011, 1-5.
- 탁종연,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2006, 59-80.
- 탁종연,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0, 제21권 제3호, 53-75.

- 탁종연, "경찰의 정책결정이 절도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2011, 245-286.
- 탁종연·노성훈, "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1호, 2009, 41-70.
- 탁종연·박성민,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발견과 해결통계 개념을 중심으 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4, 177-200.
- 탁종연·박형민, "경찰관들은 어 폭력사건을 비공식 처리할까?",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2012, 375-398.
- 황지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279-303
- 황지태,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7-51.

2. 국외문헌

- Avakeim, E.F., Fyfe, J.J. & McCoy, C. "Did you call the police? What did you do?: An empirical assessment of Black's theory of mobilization of law" Justice Quarterly, 16, 1999, 765-792.
- Bachman, R, "The factors related to rape reporting behavior and arrest: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 1998, 8-29.
- Black, D. The production of crim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1970, 733-748.
- Von Hofer, H. "Crime Statistics as Constructs: the Case of Swedish Rape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8, 2000, 77-89.
- Yung, C. R., "How to Lie with rape statistics: America's hidden rape crisis", Iowa Law Review. 99, 2014, 1197-1256.

Problems in Comparing Crime Rates across Geographic Regions

Tark, Jongyeon*

Annuall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announces a list of dangerous places based on official crime rates, which is in turn reported by the mass medias. What is unrecognized is that the official crime rates is far from a fair and objective indicator of crime risk of places. Therefore, it is a dangerous practice to compare places based on crime rates.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that the major problem lies in both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denominator, and crime statistics, the numerator of crime rates. The number of population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does not show the numerous people who live, commute, or visit a place without the formal resident registration. Official crime statistics do not reflect the considerable variation of hidden crimes in perceiving, reporting, investigating, and recording phrase of the statistics. Based on the evidence from the Korean Victimization Survey, 112 reporting statistics, and crime statistics, it is shown that reporting rates and investigation rates substantially vary across geographic regions in Korea.

• Key Words: risk of crime, crime rates, official crime statistics, reporting rat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